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리스 과업지시서

2026. 10.

창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리스 과업지시서

Ⅰ 개 요

○ 사업명: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용차량 임차(리스)용역
○ 사업내용: 자활근로 사업용 차량 임차(장기계속계약)
○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
○ 인수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총사업비: 금 41,100,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포함 금액. 정비불포함 부가세 미발생

Ⅱ 차량조건

차 종	더 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색 상	외부) 쉬머링 실버 메탈릭 내부) 그레이
수 량	1대
세부사양	- 엔진: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 트림: 투어러 모던 - 승차정원: 11인승 - 구동: 2WD - 변속: 6단 자동변속기 - 선택품목: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Ⅱ - 정비불포함
추가용품	- 측후면, 전면 썬팅 - 블랙박스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41,100,000원(※ 임차기간 60개월)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탁송료, 제세공과) 포함
만기조건	- 만기 시 반납 또는 잔가 인수 가능
기타조건	일반자동차 번호판 사용 (허, 하, 호 등 렌트 차량 번호판 불가)

Ⅲ 계약 세부조건

1. 일반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도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146호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연간 약정 주행거리	- 20,000㎞
보증금·선납금·개시대여로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차량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2. 계약(임차)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가 행하는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② '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계약의뢰인이 선정한 차량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는 시설대여를 말한다.

③ 임차(리스)기간은 5년(60개월)으로 한다.

④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뢰인'이라 함은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를 말하며,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의뢰인'이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도기일 및 지체상금)

① 인도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되 인도일 및 인도장소를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뢰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해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월납입료는 계약금액을 60개월로 분할한 차량대여료로 한다.

② 차량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대여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6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의뢰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

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량은 ‘계약의뢰인’이 제시한 리스차량 세부내역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뢰인’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의무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6.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